

『구미시 왕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8년 12월 8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12월 9일

라. 상정일자 : 2008년 12월 18일

제13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정책기획실장 최 경 환

나. 제안이유

- 우리 고장출신의 항일 의병장(13도연합 창의군 군사장)이신 왕산 허위 선생의 숭고한 우국충정을 기리고,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나라사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한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안 구성 : 5장 25조
- 업무 및 기능(안 제3조)
 - 기념관 자료의 수집·전시 및 관람 업무
 - 소장품의 보관·진열·수리·모사 및 복원

- 기념관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- 그 밖의 기념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항
- 개관 및 휴관(안 제4조)
 - 매주 월요일, 1월1일, 설날 및 추석 연휴일, 그 밖에 시장이 필요에 의해 정하는 휴관일 외에는 매일 개관
- 관람시간 및 관람료(안 제5조, 제6조)
 - 하절기(3월 ~ 10월) : 09:00 ~ 18:00
 - 동절기(11월 ~ 2월) : 09:00 ~ 17:00
 - ※ 관람료 : 무료 개방
- 운영위원회(안 제18조~제22조)
 - 기념관의 전문적,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
 - 위원수 : 위원장 포함한 11인 이내
 - 임 기 : 2년이내, 연임 가능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」 제19조
-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 제4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과 중 현

○ 본 조례안은

- 왕산기념관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 임

○ 주요 내용은

- 조례를 총 제5장 제25조로 규정하면서 안 제1조부터 안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, 위치 및 업무,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
-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개관 및 휴관, 관람시간, 관람료, 행위의 금지 등 관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
- 안 제11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운영의 위탁, 수탁자 선정, 협약 체결, 지원 등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
- 안 제18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기념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목적, 명칭, 구성, 회의, 임기,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기념관 설치·운영 조례안은

우리고장 출신의 항일 의병장이신 왕산 허위 선생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또한 청소년 및 자라나는 후세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 될 것으로 판단됨

- 검토결과 재검토 사항은

안 제4조 기념관의 휴관일을 1월 1일, 설날 및 추석연휴, 매주 월요일로 규정하였으나 설날이나 추석 연휴기간 전부를 휴관일로 정한 것은 조례제정의 취지와도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,

안 제4조 제2항 제1호 기념관 휴관일을 「1월 1일, 설날 및 추석 연휴」에서 「1월 1일, 설날 및 추석」으로 수정하여 연휴를 삭제함이 타당한지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